

協會定款 (施行細則, 処務規定 包含)

第1章 名称 및 事務所

第1條 本會는 社團法人 大韓物理治療士協會라 稱하며 事務所를 서울特別市에 둔다.
英名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第2章 構 成

第2條 本會는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各道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現在 서울·釜山·慶北支部가 있음) 1976. 2

第3章 目的 및 事業

第3條 本會는 國民保健의 向上을 爲하여 物理療治醫學의 研究發展과 會員相互間의 親睦과 權益을 圖謀하여 醫療事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며 다음 事業을 한다.

1. 物理療治醫學과 技術發展에 關한 事項
2. 國際的 物理醫學 知識의 交換에 關한 事項
3. 會員親睦에 關한 事項
4. 當局에 對한 建議과 團體契約에 關한 事項
5.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項

第4章 會 員

第4條 本會會員은 大韓民國의 物理治療士 免許證을 所持한 者로써 所定의 入會節次를 畢하여야 한다.

第5條 會員은 總會의 構成人員이 되며 選舉及 被選舉權을 갖는다.

第6條 本會의 會費 및 入會金은 別途理事會에서 定하고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7條 會員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警告 또는 會員의 權利를 停止한다.

1. 醫療倫理에 違反하거나 本會의 名譽를 毀損한 者.
2. 本會의 定款을 違反하거나 또는 秩序를 紊亂케 한 者.

第5章 任員 및 任員選舉

第8條 本會는 다음 任員을 둔다.

會 長	1名	理 事	12名 (會長 및 副會長 包含)
副會長	1名	監 事	2名

第9條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를 總理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効時에는 會長職을 代行한다.

③理事는 會務를 處理하며 理事會를 構成한다.

④監事는 本會의 會務 및 財政을 監査한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11條 ①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②任員選擧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細則으로 定한다.

第12條 ①任員에 欠員이 생길때의 補欠選擧는 總會에서 補選한다.

②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余期間으로 한다.

第13條 ①本會에 顧問을 둘 수 있다.

②顧問은 會長의 推選으로 理事會의 認灌을 받아 會長이 委囑한다.

③顧問의 任期는 會長의 任期와 同一하다.

第6章 會 議

第14條 總會는 會員 全員으로 構成한다.

第15條 ①總會는 正期總會 및 臨時總會로 한다.

②正期總會는 年 1回 11월에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理事會 및 會員 1/5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③總會의 召集은 總會 1個月前에 會議의 目的事項 日時 및 場所를 公告하고 各 支部에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16條 總會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成立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재적회원이라 함은 활동회원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17條 總會에서는 다음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附議 또는 移付되는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第18條 理事會는 총회에서 선출한 理事로써 構成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議長이 된다.

第19條 理事會는 이사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결정한다.

第20條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사업계획 및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위임된 사항
3. 정관세칙의 立案改廢
4.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5. 회원 복지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대한 사업 보고

第21条 A. 본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단, 事務局長은 會長의 제창에 의하여 理事會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B. 事務局에는 總務局·學術部·財務部·事業部를 둘 수 있다.

C. 事務局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국의 지도감독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제반사항

第7章 監 事

第22条 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한다.
2. 理事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不正不備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총회 또는 主務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第8章 財 政

第23条 본회의 재정 수입은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회비, 입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第24条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단, 정부회계연도 변경시 같이 갱신한다.)

第25条 각 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第26条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및 사업목적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第9章 学会 構成 및 運營

第27条 본회 (중앙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학회를 구성할 수 있다.

第28条 학회의 구성회원은 본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에 따라 준회원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第29条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중앙회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第10章 補 則

第30条 본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 및 처우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附 則

1. 본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 시행당시의 회무에 관한 모든 권리와 본회 임원 및 고문은 본 정관에 의하여 취득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任員選拳 施行細則

第1章 임원선거

第1条 임원선거라 함은 회장·부회장·감사 선거를 말한다.

第2章 資 格

第2条 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과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출마할 수 있으며, 단 회장·부회장(정 부회장)이 조를 편성하여 출마할 수도 있다.

第3条 비 활동 회원은 출마할 수 없다.

第3章 選拳管理委員

第4条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第5条 선거관리위원은 1인 이상의 추천과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第6条 선거관리위원은 5명으로 하며, 1명은 위원장, 4명은 위원으로 한다.

第7条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선거를 총괄하고, 관리위원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第4章 選 拳

第8条 선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第9条 가부동수인 경우는 재선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시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임원만이 당선을 인정한다.

第10条 지부회원의 선거권은 대의원이 이를 대행한다.

단, 지부회원수에 비례해서 지부장·부지부장·총무에게 권한을 대행한다. (지부중 서울지부만은 협회의 일정기간까지 위의 조항에서 예외로 한다.)

附 則

1. 본 시행세칙 개정은 이사회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된 임원선거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얻어야 한다.

規程

第1章 決裁業務

第1条 諸公文은 會長·副會長·各 理事 及 事務局長의 決裁가 있는 后 發送한다.

第2条 支出決議書는 會長·副會長·財政理事·事務局長의 決裁를 得해야 한다.

第3条 會議錄은 事務局長이 作成하여 理事会 及 定期總會에서 朗讀해야 하고, 各 理事의 捺印을 得해야 한다.

但, 各 理事란 財政理事·學術理事·國際部 理事를 말한다.

第2章 財政業務

第4条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내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第5条 會員으로서 現職에 終事하지 않는 會員은 會費의 半額을 納付해야 한다.

第6条 會員中 士兵으로 軍服務中인 者는 軍服務를 畢할 때까지 會費 全額을 免除한다.

但, 兵役證明書を 提示한 會員에 限한다.

第7条 會費의 全額을 會計年度內에 納付치 않은 會員과 現職에 終事하지 않는 會員은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非活動 會員으로 認定한다.

第8条 非活動會員이 活動會員이 되려면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活動會員에 準한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9条 會費 10年分을 先納한 會員에게는 永久會員의 資格을 附与한다.

第10条 永久會員은 永久히 本協會費를 納付할 義務가 없고, 會員의 權利는 永久히 갖는다.

第3章 支部設定 및 運營

第11条 本會에서는 必要에 따라 支部를 設立할 수 있다.

第12条 各 支部에서는 運營事項을 即時 中央會(本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支部運營費는 支部 會員會費의 40%로 充當하고 60%는 中央에 納付해야 한다.

第13条 各 支部에서의 議事事項은 理事會에서 결의한다.

第14条 중앙회에서는 支部운영 사항을 年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

第4章 學會構成 및 運營

第15条 本會에서는 必要에 따라 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學회의 구성목적은 물리치료학에 관한 연구 발표 및 學術강연은 물론 국제물리치료학회와의 學術교류에 관한 포괄역할을 함에 있다. (단, 중앙회가 經하는 일정기간동안 집담회는 支部에서 담당)

第16条 學회의 構成회원은 正회원·准회원· 명예회원으로 構成한다. 단, 准회원, 명예회원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둘 수 있다.

第17条 학회의 운영사항은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예산은 집담회·학술대회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第5章 理事會

第18条 이사회는 회장단에서 추천한 이사로써 구성하며, 매월 1회이상 이사회를 개최한다.

第19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의한다.

第20条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第21条 불참이사는 출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第6章 賞 罰

第22条 협회운영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감사장 및 표창장을 증정할 수 있다.

第23条 협회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第7章 学生会費

第24条 물리치료를 연구하는 학생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학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第25条 학생회원은 본회 회비의 1/3을 납부해야 한다.

第26条 학생회원은 학술대회에 참가 및 발표할 권한을 갖는다.

第27条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가권을 갖되 선거권·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발언권은 부여한다.

附 則

1. 처무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출석이사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된 처무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지부운영에 관한 조문 제12조는 1975년 2월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지부운영비에 관한 사항)

學 會 會 則

第 1 章 總 則

- 第 1 条 本會는 大韓物理治療士協會定款 (第 9 章 第 27 条)에 依하여 設立한다.
- 第 2 条 本會는 大韓物理治療學會라 稱한다.
- 第 3 条 本會則은 大韓物理治療士協會 定款에 依挾 (제 9 章 29 条)하여 制定한다. 그러므로 中央會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第 4 条 本會의 本部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 第 5 条 本會의 目的은 物理治療學의 發展과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는 데 있다.

第 2 章 事 業

- 第 6 条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아래 事業을 行한다.
- 1) 物理治療學研究, 發表 및 學術講演會 開催에 關한 일
 - 2) 物理治療士 講習 및 物理治療學 普及에 關한 일
 - 3) 學會誌 發刊에 關한 일
 - 4) 國外 物理療法學會와의 連結
 - 5) 本學會 會員間의 親睦에 關한 일
 - 6) 其他 本 目的達成에 必要한 일

第 3 章 會 員

- 第 7 条 本會에 入會코져 하는 者는 所定의 入會節次에 따라 入會申請을 하고, 本會 任員會의 審査를 通過하여야 한다.
- 第 8 条 會員은 正會員, 準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한다.
- 第 9 条 正會員은 大韓物理治療士 協會에 加入한 會員이라야 한다.
- 第 10 条 準會員은 大韓民國의 物理治療學科를 專功한 者로써 免許證을 所持하지 못한 會員이거나, 現在 物理療法科를 專功하는 學生이라야 한다.
- 第 11 条 名譽會員은 本會 또는 醫學界에 公헌이 현저한 內外人士로써 每年 會長의 推薦으로 任員會의 認灌을 받아야 하고, 選舉權 · 被選舉權과 會費부담이 없다.
- 第 12 条 正會員 및 準會員은 任員會에서 決定한 부담금을 納付할 義務가 있다.

第 4 章 役 員

- 第 13 条 本會 役員 및 任期는 아래와 같다.
- | | | | |
|-----|-----|----|-----|
| 會 長 | 1 名 | 任期 | 2 年 |
| 副會長 | 1 名 | " | " |

任 員 7名 上 과 同(학술임원은 4명)

監 査 1名

第14条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總會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된다.

第15条 次期會長은 會長 有故時에 이를 代理한다.

第16条 任員은 任員會를 構成하여 本會 會務를 處理 수행한다.

第17条 監事는 會務와 財政을 監査한다.

第18条 會長·副會長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19条 임원은 회장단에서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第20条 本會는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若干名의 顧問을 둘 수 있다. 顧問은 本會 事業을 逐行 促進키 爲하여 會長 및 任員會의 諮問에 應한다.

第5章 會 議

第21条 總會는 定期 및 臨時總會로 하고, 定期總會는 每年 物理治療學會 期間中에 開催地에서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任員會 或은 正會員 1/3以上이 要請할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總會 開催通告는 開催 1個月前, 臨時總會는 二週日前에 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22条 總會는 正會員 在籍人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되고, 諸議決은 出席人員 過半數로 한다.

第23条 總會에 提出한 案件은 定期總會 15日前까지 會員에게 文書로 件名과 要旨를 記入하여 通知하여야 한다.

第24条 總會에 案件을 提出코져 할 때는 出席會員 1/3以上의 贊意를 얻어야 한다.

第25条 總會는 아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 1) 重要事業 方針에 關한 事項
- 2) 予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 3) 任員選舉에 關한 事項
- 4) 會則의 修正 및 制度에 關한 事項
- 5) 任員會에 附議 또는 移送되는 事項
- 6) 本 會則에 依하여 審議되는 事項
- 7) 其他 會長이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26条 任員會는 會長, 次期會長 및 任員으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27条 任員會는 各 任員으로 하여금 總務·學術·審査·企劃 4個의 部分을 分擔하게 한다.

第28条 任員會는 定期 및 臨時會로 하고 定期會는 2個月에 一回, 臨時會는 會長 또는 任員 4名以上의 要請에 依하여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29条 任員會의 任務는 아래와 같다.

1) 欠員된 任員의 補選, 任員의 任免 其他 會則에 規定된 業務

2) 企劃; 諸政策에 關한 計劃 및 進行

3) 學術; 學會誌 發刊, 學術大會 및 集談會에 關한 事項

4) 總務; 歲入·歲出 予算編成 및 會費審查料의 策定

5) 審査; 會員의 資格審査·名譽會員 및 顧問의 推薦, 賞罰에 關한 事項

第30條 會長은 會務를 諮問받기 爲하여 會員中에서 10名内外의 咨問위원을 定期總會后 10日 以内に 委囑한다.

第31條 任員會의 書記는 總務로 하고, 그 事業을 總會에 報告한다.

第6章 財 政

第32條 本會의 財政은 아래의 收入으로 充當한다.

1) 中央會 補助(學術誌 及 學術大會準備費)

2) 贊助金 및 其他

第33條 本會 財産中 現金은 會長 名義로 金融機關에 預入하고 總무가 擔當한다.

第34條 會計年度는 中央會會計年度에 準한다.

第7章 罰 則

第8章 附 則

第1條 本會 會則의 修正은 總會에서 하되 在籍任員 過半數 以上の 參席과 出席會員 2/3 以上の 贊同을 얻어야 한다.

第2條 本會則은 學會가 發足한 날 부터 効力을 갖는다.